

<전문대학원 통합에 따른 규정개정>

1. 철강대학원 학칙 신규대비표

현행	기획 검토(안)	비고
<p>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에는 철강학과를 둔다.</p> <p>② <u>철강학과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된 정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에는 철강학과를 두며, <u>철강학과 내에는 세부전공으로 철강과 플랜트엔지니어링을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<u>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에</u>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.</p>	<p>철강과 엔지니어링 대학원 각각의 세부전공 명시</p> <p>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</p>
<p>제10조(편입학) ① 타 대학 교원이 본 대학원으로 전직함에 따라 그 지도학생이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대학원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수는 해당년도 입학정원 내에 한한다.</p>	<p>제10조(편입학) ① 타 대학 교원이 본 대학원으로 전직함에 따라 그 지도학생이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"대학원위원회"이라 한다)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생수는 해당년도 입학정원 내에 한한다.</p>	<p>철강대학원 대학원위원회라는 것을 명확히 함</p>
<p>제11조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<u>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"대학원위원회"이라 한다)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/p>	<p>제11조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<u>대학원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/p>	
<p>제13조(학생소속 변경) ① <u>본 대학에서 본 대학원으로</u> 지도교수가 이직을 함에 따라 <u>본 대학원으로</u>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으로</u>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소속을 변경한 학생이 일반대학원에서</u> 취득한 학점, 수업연한,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, <u>대학원위원회의 재사정을 거쳐</u>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, 시행한다.</p>	<p>제13조(<u>전과</u>) ① <u>본 대학의 타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전과를 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 학생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기존 소속의 대학원에서</u> 취득한 학점, 수업연한,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, <u>대학원위원회의 재사정을 거쳐</u>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, 시행한다.</p>	<p>명칭을 '전과'로 통일(학칙, 및 대학원학칙에도 전과라고 명시하며 고등교육법에서도 '소속변경'이라는 말은 쓰지 않음),</p> <p>철강에서 다른 대학원으로 전과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도 마련(1항에 통합)</p>
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유지)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6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제4조의 플랜트엔지니어링 세부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	
